

###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97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9년 월 일  
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  
 (소관부서 : 보건환경연구원)

제안이유

- 수수료 감면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·개선 하려는 것임

주요골자

- 수수료 감면 사항 개정
  - 배출시설에 대한 정기환경오염도 검사 ⇒  
배출시설에 대한 환경오염도 검사 및 지도·단속을 위한 경우로 개정
- 수수료 감면 사항 신설
  - 기타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신설

개정조례(안) 및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관계법령 및 참고자료 : 별첨

##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(안)

제5조(수수료 감면) 제3호중 “배출시설에 대한 정기환경오염도 검사”를 “배출 시설에 대한 환경오염도검사 및 지도·단속을 위한 경우”로 하고 동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기타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